

폐합성수지류 등 위탁처리 과업지시서

1. 과업의 개요

- 가. 과업명 : 대형생활폐기물(폐합성수지류 등) 위탁 처리 용역
- 나. 처리량 : 8,000톤(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·감)
- 다. 과업기간 : 계약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
- 라. 업종자격 : 폐기물중간처분업(소각) 허가를 득한 업체

2.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

가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『대형생활폐기물(폐합성수지류 등)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』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나. 과업의 목적

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 등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3. 과업의 내용

가. 과업의 이행사항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.

나. 폐기물의 처리내용 및 방법

- 1)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2) 폐기물의 운반은 계약업체가(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자)가 지정한 처리시설까지 발주청(또는 위임받은자)에서 하며, 도로 여건 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계약업체가 부담한다. 단,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시에는 폐기물의 운반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계약업체가 직접하여야 한다.
- 3) 특별한 사유 없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반입 및 처리를 거부하거

나 지연(대기) 시킬 수 없다.

- 4)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, 계약 파기시 계약 보증금(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)은 국고에 귀속된다.
- 5) 계약업체는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계량을 실시하고, 계량전표 1부를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전표의 사본을 월간 기성준공 시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차량의 소속 및 번호, 반입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6) 계약업체는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하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.

4. 기타사항

- 가.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준용하며,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발생 시에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.
- 나. 폐기물의 연간 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, 쌍방간의 합의 시 폐기물의 연간 처리량을 변경할 수 있다.
- 다. 계약업체는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이후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하고,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위탁 및 매립을 할 수 없다.
- 라. 계약 상대방은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하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.

2016. 1

강남구 청소행정과